

책임준공학약서

주식회사 데일리펀딩대부(아래 기재된 대출약정에 명시된 대주를 말하며, 대출약정상의 대주의 지위 및 대출채권 및 이에 부수하는 권리가 양도된 이후에는 그 양수인을 말함) 귀중

당사는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768-6의 3필지에 생활형숙박시설2개동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시공사로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차주 겸 위탁자로서 주식회사 ' ', 주식회사 ' ' (이하 "차주"), 대주로서 주식회사 테일리펀딩대부(이하 "대주"), 시공사 당사(이하 "시공사") 등 사이에 2018년 2월 28일자로 체결되는 대출약정(서)[이하 "대출약정(서)"이라 하며, 이후 변경 또는 추가된 내용을 포함]과 관련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들을 확약하고 보증합니다.

본 확약서에서 달리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대출약정서에서 정의, 사용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 (1) 본 확약서에서 “책임준공”이라 함은 천재지변, 내란,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주의 의무 불이행, 사업비 부족, 공사비 지급 지연, 차주 또는 시공사에 대한 부도사유 발생, 민원, 대주의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를 얻지 아니한 설계변경, 본건 사업 관련 인허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점유자의 명도지연, 시공사의 귀책사유 유무, 문화재 빌굴 여부, 대출약정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여부 등을 포함하여 일체의 이유를 불문하고 다음 사항이 모두 충족된 경우를 말합니다.

 1. 당사는 최초 인출일로부터 일십사(24)개월이 경과하는 달에 속하는 최초 인출일의 응당일(이하 “책임준공예정일”)까지 관계 법률, 공사도급계약 등에 부합하도록 본건 공사를 완료하고, 본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제외)을 관계 주무관청으로부터 득하여야 합니다.
 2. 당사는 이 약정의 조건에 따라 본건 건물에 대한 분양률의 저조, 비정상적인 건설 내지 금융환경, 하수급인, 물품 및 자재공급업자, 운송업자 등 제3자에 의한 의무불이행 내지 지체, 건설자재의 부족, 노사분쟁 등의 경우에도 본건 건물을 책임준공예정일까지 준공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에 따라 공사대금이 증액되어 그 증액된 공사비를 적기예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책임준공예정일까지 본건 건물에 대한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2) 당사는 차주가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포함하여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제(1)항에 따라 책임준공할 것을 귀사에 대하여 확약하고,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는 본건 건물의 건설과 관련하여 건설에 투입되는 당사의 피고용인, 하수급인 등의 선임, 감독 및 이로 인한 분규와 건설장비 등의 도입 및 사용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들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부담합니다.
 2. 당사는 본건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규 및 공사도급계약에 의한 하자보수기간 동안 하자 발생 이후 지체 없이 당사의 비용과 책임 하에 이를 보수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차주 기타 제3자가 그 하자를 보수하는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3. 당사는 본건 사업의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문제, 안전사고, 인근시설 및 주민을 포함한 제3자에 대한 인적, 물적 피해 및 손실 기타 제반 민원(다만, 일조, 조망, 프라이버시, 영업손실 등을 직·간접 원인으로 한 민원은 제외하며 이 경우는 사업성 민원으로서 차주가 처리, 해결한다)에 따른 일체의 사항들을 당사의 전적인 책임 하에 처리합니다.

- (3) 본 확약서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출약정 및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018년 2월 28일

시공사 주식회사 건설
경기도 대표이사 강

